

ACP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21. 2. 2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Annals of Coloproctology (ACP)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ACP 논문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ACP 논문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연구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 ACP 발행 후 연구출판윤리에 관련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 심의의 주된 사항에는 위조, 변조, 표절와 생명윤리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자격(authorship), 중복게재, 이해관계,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ACP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COPE Flowcharts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